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경선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54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이경선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고병국, 김제리, 임만균, 정재웅,  
노식래, 김화숙, 송아량, 박상구,  
권순선, 김 경 의원 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국토 계획법 시행령)」이 일부개정('19.3.19) 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이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이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확대되었음.
- 이는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필요시설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한 것임.
- 이러한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감안하고 주거안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, 이를 통한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명시된

‘공공임대주택’과 ‘기숙사’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여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지구 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정함 (안 제19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영 제46조제1항”을 “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”로, “기반시설”을 “시설”로, “영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청사, 문화시설, 체육시설, 도서관, 연구시설, 사회복지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.”를 “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2조제1항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.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시 계획조례가 정하는 <u>기반시설</u>이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<u>공공청사, 문화시설, 체육시설, 도서관, 연구시설, 사회복지시설, 공공직업훈련시설, 청소년수련시설,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</u>을 말한다.</p>	<p>제19조(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영 제42조의3제2항제12호----- 시설-----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제2조제1항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.</p>